

2025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경 기 도 교 육 청

2025. 2.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행정담당]

<2025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

☐ 취학유예 및 입학연기 관련 제출서류 추가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취학유예 및 입학연기	...(전략) 취학유예통지서 제출	...(전략) 취학유예통지서 제출, 초등학교 입학연기서 같음 가능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취학유예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추가 서류 내용 안내

☐ 지급자격 내용 수정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자격결정	대상자의 체류지, 등록일 등을 확인하여 지급자격 결정	대상자의 등록일 등을 확인하여 지급자격 결정 (주소지에 관계없이 등록한 유치원을 기준으로 지급자격 결정)	2024학년도부터 경기도 내 전 지역 외국인 유아학비 지급에 따라 체류지 확인 과정 생략

<목차>

I. 지원목적	1
II. 지원근거	1
III. 지원내용	1
☐ 세부 지원내용	1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2
IV. 세부추진내용	2
☐ 외국인 유아학비	2
V. 참고자료	7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8

I 지원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 경기도 관내 공·사립유치원 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II 지원근거

-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 11. 20.)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2(사업)

III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2025. 3. 1.부터 적용

○ 외국인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금액(원/월)	
			공립	사립
유아학비 (유치원)	5세	2019. 1. 1. ~ 2019. 12. 31.	100,000	280,000
	4세	2020. 1. 1. ~ 2020. 12. 31.		
	3세	2021. 1. 1. ~ 2022. 2. 28.		
방과후과정비	3~5세	2019. 1. 1. ~ 2022. 2. 28.	50,000	70,000

※ '2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5-5호, 2025. 2. 3.)

※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및 정산은 연도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지원금 산정방식을 준용함

❖ 공립유치원 안내사항 ❖

- ☑ 입학금과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집행
- ☑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우선 집행**
- ☑ 시설비 및 공공요금 등 유치원 운영을 위한 간접교육비로 집행 불가
- ☑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급식비 100% 지원으로 급식비 집행 불가

※ 단, 수익자부담으로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유아학비로 급식비 집행 가능

※ 수업료 징수금액 및 납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재무관리과)에 문의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입학 시 방문하여 신청**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필요** (단,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같음)

- 지원금 지급: 유아학비 신청에 따라 교육지원청 → 유치원 입금

❖ 외국인 유아학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

- ☑ 외국인 유아도 반드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출결관리
- ☑ 정산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진행
- ☑ 재정여건상 신규 신청이 중단될 수 있음에 유의

IV 세부추진내용

※ 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등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준용함

□ 외국인 유아학비

- 지원대상 및 기간

- ▶ 지원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3~5세 유아**

※ 유치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함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8. 1. 1.~'18.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초등학교 입학연기서 같음 가능)**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금액: 'Ⅲ.지원내용'의 세부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산정 공통기준 ❖

- ☑ 외국인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따름
 - ☞ **보호자의 미신청에 따른 소급 지원은 불가하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규정을 준용, 비용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 본 계획 내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 「유치원생활 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는 다른 개념임
 - ☞ 교육일수: 연도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 수업일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④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 인정일 산정 기준 ❖

-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단,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예: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단,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및 나이스 상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 ※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및 나이스 상 자동으로 입학학적변동일 혹은 교육일수 조정

① **입학 시: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정

❖ 입학일에 따른 지원액 산정 예시(사립유 예시) ❖

유치원 개학일	유아 입학일	자격 신청일	지원 시작일	
3월 4일	3월 4일	3월 1일	3월 1일	(입학1)
	3월 4일	3월 4일	3월 4일	
	3월 14일	3월 18일	3월 18일	(입학2)
3월 24일	3월 24일	3월 1일	3월 24일	(입학3)

(입학1)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4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Rightarrow 280,000\text{원}(\text{입학일 } 3\text{월 } 1\text{일 적용})$

(입학2) 3월 14일에 중간 입학하고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유아의 3월 지원액
 $\Rightarrow 280,000\text{원} \times 14(\text{교육일수}) / 31(\text{해당월의 일수}) = 126,450\text{원}$

(입학3)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24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Rightarrow 280,000\text{원} \times 10(\text{교육일수}) / 31(\text{해당월의 일수}) = 90,320\text{원}$

- ② 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단, [붙임1]‘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중 방과후과정 신청 유아’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 유아가 방과후과정 정상 출결 시, 해당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 학기 중 및 방학 중 유아학비 지원액 산정 예시 ❖

☑ (학기) 3월 14일 ~ 4월 11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지원액: $280,000\text{원} \times 13(\text{교육일수}) / 31(\text{해당월의 일수}) = 117,430\text{원}$

☞ 4월 지원액: 28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 (방학) 8월 4일 ~ 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공립) 지원액: $100,000\text{원} \times 9(\text{교육일수}) / 31(\text{해당월의 일수}) = 29,030\text{원}$

☞ (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 및 출석한 유아 = 100,000원 전액(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 전액(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③ 학적 중단 시: 학적 변동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 계산)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 휴학일 경우, 학적 중단 시 적용되는 유아학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산정

❖ 학적 중단 시 ❖

- ☑ 유치원 학적 중단(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후 가정양육 전환) 전에 자격 변경 신청 시 신청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지원이 불가함**
- ☑ 유치원 학적중단이 완료된 이후 **학부모가 타 서비스(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로 자격 변경을 별도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
- ※ 신청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부담비용 및 미지급분 등은 **소급지원이 불가함**

❖ 학적 중단 시 유아학비 지원액 산정 예시(사립유치원) ❖

- ☑ (예시1)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학적을 중단한 유아의 지원액
☞ $280,000\text{원} \times 25(\text{교육일수}) / 30(\text{해당월의 일수}) = 233,330\text{원}$
- ☑ (예시2) 2월 15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 (교육일수 15일 이상)

- ④ 재량휴업일·방학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 시 학부모 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 및 졸업 이후 유아학비 지원액 산정 예시 ❖

- ☑ (예시1) 2월 5일에 졸업(방학)한 유아, 2월 20일까지 방과후과정 출석
 - ① 교육과정 시간(09:00~14:00), 15일 이상 출석
 - ☞ (공립) 유아학비 100,000원 지원, 방과후과정비 미지원
 - ☞ (사립) 유아학비 280,000원 지원, 방과후과정비 미지원
 - ※ 15일 미만 출석 시, 유아학비 일할 계산
 - ② 1일 8시간 이상, 15일 이상 출석
 - ☞ (공립) 유아학비 100,000원 지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지원
 - ☞ (사립) 유아학비 280,000원 지원, 방과후과정비 70,000원 지원
 - ※ 15일 미만 출석 시,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일할 계산

○ 지원방법 및 절차

- ▶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

※ ‘24년에 외국인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5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가능

- ▶ **자격결정:** 대상자의 등록일 등을 확인하여 지급자격 결정
(주소지에 관계없이 등록한 유치원을 기준으로 지급자격 결정)
- ▶ **지 원:** 유치원 청구(신청)내역 확인 및 지원금 입금(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유치원)

❖ 외국인 유아 수업료 징수 관련 업무처리 안내 ❖

☑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3007(2023. 2. 27.) 「외국인 유아학비 수업료 징수 관련 업무처리 안내」

※ 외국인 원아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상 내국인 원아와 달리 무상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업료 납부 대상**이나,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내·외국인 원아 간 차별을 해소하고, 학비 지원의 취지와 맞추어 외국인 원아들에게 수업료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에서 수업료를 원아에게 징수가 아닌, 지원하는 외국인 유아학비 중 일부 금액을 수업료로 납부**할 수 있음

- ▶ **정 산:** 매 분기 외국인 유아별 지원 명단 및 집행실적 제출
- ▶ 업무처리 절차

대상	업무처리
보호자 (학부모)	▶ 유치원에 방문하여 외국인 유아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치원	▶ 학부모 신청을 받아 유치원이 신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외국국적 유아 등록 및 출결관리 ▶ 신청 이후 다음 분기 시작월 10일까지 신청 유아의 이전분기 출결 상황을 제출([붙임4] 양식 참고)
교육지원청	▶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분 취합 후 유아교육과 제출 ▶ 유치원 신청 유아의 분기별 출결상황 취합 후 유아교육과 제출 ([붙임4] 양식 참고)
도교육청	▶ 대상자의 체류지, 등록일 등을 확인하여 지급자격 결정 ▶ 분기 시작 월 15일 전후 당해 분기 지급분 산정 ※ 최초사업 시작 3월은 1분기 전액 지원 후, 다음 분기부터 유아별 입퇴원 및 체류지 유지여부,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분기 정산 및 다음분기 지급) ▶ 교육지원청에 지원금액 산정분 알림 및 재배정 ▶ 분기별 집행 및 정산
교육지원청	▶ 지원금액 산정분에 따른 집행(분기별 집행 및 정산) ▶ 분기 시작월 20일 전후 전분기 정산 및 다음분기 지출 ※ 최초사업 시작 3월은 1분기 전액 지원 후, 다음 분기부터 유아별 입퇴원 및 체류지 유지여부,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분기 정산 및 다음분기 지급)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유치원생기부작성및관리지침 개정안 반영)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유아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부모의 출산)
-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결석계(질병 결석 신고서) 징수·보관

□ 유의사항

- 학부모는 유아 교육일수 인정특례 각호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 신청서, 결석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 시 위의 특례에 따라 교육일수로 인정 되는 경우, 당일 방과후 과정은 동일 사유로 인정 가능
-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예: 금요일·월요일 질병결석 시 토·일요일은 관계없이 8호 사유로 2일 인정)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3호(교외체험학습)·7호 외 사유만 적용 가능하며, 8호는 연간 인정 가능한 범위(30일) 내에서 적용 가능
- 제6호를 사유로 교육일수를 인정받는 경우,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